



제316회 정례회

2012.12.17.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12월 4일

○ 회부일자 : 2012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취득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충청북도교육청	건물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2,170	4,176,330
	건물	스마트에듀유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8,188	9,000,000
	건물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신축	2,520	10,050,000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932	2,008,450
	건물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556	2,472,000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충주교육지원청	건물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1,232	2,260,315
제천교육지원청	건물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200	2,604,680
	건물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신축	3,384.14	4,838,384
보은교육지원청	건물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1,419.8	3,176,773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건물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302	2,684,850
합계		(10건)	23,903.94	43,271,782

①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취득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
- 취득면적 : 2,170m² / 120명 수용
- 취득금액 : 4,176,330천원
- 사유 : 취업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충북 북부지역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신축

② 가칭)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유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 취득위치 :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 취득면적 : 8,188m²
- 취득금액 : 9,000,000천원
- 사유 :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에듀유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축

③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 취득위치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 외
- 취득면적 : 2,520m²
- 취득금액 : 10,050,000천원
- 사유 : 2015년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④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08
- 취득면적 : 932m²
- 취득금액 : 2,008,450천원
- 사 유 :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⑤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7
- 취득면적 : 1,556m²
- 취득금액 : 2,472,000천원
- 사 유 :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⑥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충주시 연수동 1232
- 취득면적 : 1,232m²
- 취득금액 : 2,260,315천원
 - 급 식 소 (1층) : 1,013,315천원
 - 다목적교실(2층) : 1,247,000천원
- 사 유 : 2014년 학급수 증가 대비에 따른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⑦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
- 취득면적 : 1,200m²
- 취득금액 : 2,604,680천원
- 사 유 :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⑧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 신축

- 취득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15-4 외
- 취득면적 : 3,384.14m²

- 취득금액 : 4,838,384천원
- 예산현황
 - 2012. 본 예산 : 201,000천원
 - 2012. 제2회 추경 : 4,637,384천원
- 사 유 :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9]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외
- 취득면적 : 1,419.8m²
- 취득금액 : 3,176,773천원
 - 급 식 소 (1층) : 1,257,095천원
 - 다목적교실(2층) : 1,919,678천원
- 사 유 : 급식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10]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취득위치 :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8
- 취득면적 : 1,302m²
- 취득금액 : 2,684,850천원
- 사 유 : 각종 교육활동 및 운동부 훈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교실 신축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취업 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북부지역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고, 스마트에듀윌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은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센터 설치 및 민원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 신축은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라 신축하는 것입니다.

용두초, 복대중, 증평여중, 주성고의 다목적교실은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 등을 위한 것이고, 연수초, 보은여고의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은 급식환경개선과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 것이고, 제천제일고의 본관교사 이전신축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취업 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건물 4,176,330천원으로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충청북도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은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에듀워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축을 위해 9,000,000천원으로 증축하는 사업임.
-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신축의 신축**”은 2015년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신축을 위해 건물 10,500,000천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임
- “**용두초, 복대중, 증평여중, 주성고의 다목적교실 신축**”은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용두초 건물 2,604,680천원, 복대중 건물 2,008,450천원, 증평여중 건물 2,684,850천원, 주성고 건물 2,472,000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연수초, 보은여고의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은 급식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수초 건물 2,260,315천원, 보은여고 건물 3,176,773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신축**”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건물 4,838,384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